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 번 호	605
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6.
제안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사유

- 신설 또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상급기관의 기구·정원 보강승인과 기능 및 역할 확대분야 정원보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구·정원관리와 업무수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본청 정원을 587명에서 606명으로, 사업소 정원을 330명에서 335명으로 동정원을 368명에서 364명으로 조정

- 시설공사과 건설사업계 정원 8명 보강
 - 토목·건축6급 1, 건축7급 1, 토목7급 1, 전기7급 1, 기계8급 1, 건축8급 1, 건축9급 1, 전산·통신9급 1
- 지역경제과에 정원 3명 보강 (시민시장 관리 인력)
 - 행정7급 1, 기능8등급 2(기계1, 전기1)
- 청소사업소 지도원 정원 4명을 건설과로 이관
- 공업과 전기9등급 정원 1명을 환경사업소로 조정
- 관산도서관 감귤분관 정원 9명 보강
 - 행정·사서6급 1, 행정7급 1, 사서7급 1, 사서8급 1, 사서9급 1, 기능9등급 2(전기1, 난방1), 기능10등급 2(사역1, 사서1)
- 사업소 정원 1명과 동정원 4명을 본청에 보강(민원파발이 요원)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103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, 제19조, 제21조
- 경기도 차치 12200-1213 ('97. 5. 3) 호 공문
- 경기도 차치 12200-1352 ('97. 5. 20) 호 공문

○ 소요예산 : 862,376천원

- 인건비 : 373,944천원 (년간추가소요)
- 집기구입 : 209,032천원
- 도서 및 도서정리용품 구입 : 142,000천원,
- 사무용품 및 장비구입 : 88,400천원
- 시설비 및 기타 운영비 : 49,000천원

○ 조례안 : 별첨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증 본청 "587"을 "606"으로 하고, 제4호증 사업소 "330"을 "335"으로, 제6호증 동 "368"을 "364"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한시정원에 관한 규정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공사과(건설사업계) 정원 8명의 촌속 기한은 2000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	제2조 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
1. 본 청 : 587명	1. 본 청 : 606명
2~3 (생 략)	2~3 (현행과 같음)
4. 사업소 : 330명	4. 사업소 : 335명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등 : 368명	6. 등 : 364명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 안 번 호	605
-----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7.

제안자 : 안산시장

□ 수정이유

- '95년 7월 1일 부터 '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토록 한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기구·정원에 대한 사업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경기도로 부터 한시 정원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수정 개정하여 기구·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수정 주요골자

- 존속기간이 '97년 6월 30일 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 (시범보건복지사무소) 정원(행정.보건6급1, 행정7급1, 간호7급1)을 '99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

□ 참고사항

- 관련법규(근거)
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 - 경기도 사회 65100-1212 ('97. 6. 16) 호 공문
 - 경기도 자치 12200-1708 ('97. 6. 30) 호 공문
- 소요예산(추가 소요예산) : 해당없음.
- 수정조례안 : 별첨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산시 조례 제640호(95. 8. 1) 부칙 제2항중 "1997년 6월 30일"을
"1999년 12월 31일"로 하고, 안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건소 한시정원 3명
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	(개정안과 같음)
1. 본 청 : 587명	1. 본 청 : 606명	
2~3 (생 략)	2~3 (현행과 같음)	
4. 사업소 : 330명	4. 사업소 : 335명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	
6. 등 : 368명	6. 등 : 364명	
부칙<개정95. 8. 1조례제640호> ①(시행일) (생 략) ②(한시정원에 관한 규정) 이조례 에 의하여 보건소 정원3명의 존속기간은 1997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.		부칙<개정95. 8. 1조례제640호> ①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 ②(한시정원에 관한 규정) 이조례 에 의하여 보건소 정원3명의 존속기간은 199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부 칙		부 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건소 한시 정원 3명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.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